

FTA 100% 활용하기

호주 통관환경 동향 및 FTA 활용방안



이지원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 과장

01

한국-호주 이상적인 교역파트너



호주는 남한의 약 80배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의 토지에 방대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우수한 자연 환경을 활용한 농업, 광업 그리고 서비스업(관광, 교육 등)이 발달한 국가이다. 반면 2천 3백만 정도의 적은 인구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힘들다는 점과 지리적 한계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 및 고임금 구조는 호주의 제조업 쇠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작은 면적의 국토에 천연자원도 부족하지만 우수한 인적 자원과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에게 호주는 가장 이상적인 상호보완적 교역파트너라 할 수 있겠다. 한국은 호주로부터 전략 자원을 비롯한 철강, 자동차, 에너지 등 주요 수출품의 안정적인 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호주에 자동차와 첨단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는 이상적인 교역파트너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상호 보완적인 교역파트너, 한국-호주 양 국간의 FTA가 2014년 12월 12일 정식 발효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제 7위 교역파트너(2014년 기준 수출 11위, 수입 6위) 호주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FTA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호주의 통관환경을 이해하고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다.

02

호주의 통관행정 조직



호주의 통관 절차에는 많은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구가 연계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수출입통관 관할 기구는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ACBPS)로 우리나라 관세청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ACBPS는 국경을 출입하는 각종 운송수단, 승객 및 화물을 감독 관리하고,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징수, 해상구역의 관할, 국경 보호를 위한 감시 기구를 운영한다.

2013~2014년 ACBPS 보고서에 따르면 26,170건의 수출 절차(Export entry)와 69,987건의 수입절차(Import entry)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조세 수익은 2억 6천 4백만불 가량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 ACBPS는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DBP)에 통합될 예정이다. 호주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고 타 대륙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질병에 취약하고, 오세아니아 대륙만의 동식물 고유종이 많아 외래종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에 매우 민감하다. 이러한 까닭에 호주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검역검사가 까다롭고 철저한 편이다. 이러한 검역검사를 관할하는 기관은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AQIS)이다. AQIS는 호주를 통과하는 동식물, 사람에 대한 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을 담당하고 있다.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식물수입관리법(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에 따라 Food Standards Australia and New Zealand (FSANZ)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있으며 이 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에 따라 수입 통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호주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동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03

호주의 통관 관련 법률



호주의 통관에 있어 근간이 되는 법률은 관세법 (Customs Act 1901)으로, 통관 절차, 세관검사 및 보안, 상품의 수출입, 관세부과, 금지/제한 품목, 관세양허, 반덤핑 조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4개 Volume 17개 Part로 구분하고 있다. 한-호주 FTA 체결에 따라 2014년 10월 21일 관세법이 개정 (Customs Amendment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2014) 되었으며, 이에 따른 양국간 수출입업자에 대하여 FTA 체결에 대한 쌍방적 특혜 원산지 제도 역시 동 법에서 규율하고 있다.¹⁾

이 밖에도 통상법(Commerce (Trade Descriptions) Act), 관세행정법(Customs Administration Act 1985), 검역법(Quarantine Act 1908), 수입식품통제법(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 신부가가치법(A New Tax System(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 등 통관과 밀접한 법률이 제정되어있다.

04

호주의 통관 제도



호주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한국이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방식을 채택한 것과 달리, 수출항까지의 선적 운임을 포함한 FOB(Free On Board)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로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 가격이 산정되며,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이를 어길시 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출 기업의 경우 과세 가격 변동시 지체없이 세관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주는 2013년 기준 평균 관세율 2.7%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개방형 무역 국가이다. 농업분야 제품에 대해서는 특히 1.2%의 낮은 관세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밖의 품목에 대해서도 3%의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의류 및 섬유에 가장 높은 평균 관세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죽 및 신발, 운송기기, 전기제품, 음료 및 담배 순으로 높은 관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호주 관세율 현황

구분	기준연도	전체품목	농산물	농산품외 품목
관세율(단순평균) MFN 적용	2013	2.7	1.2	3.0
관세율(가중평균)	3.9	2.6	4.2	6.8
수입액 (billion US\$)	2012	243	11.6	231.5

출처 : WTO (www.wto.org)

1) Customs Act 1901 Part VIII-The duties, Division 1J-Korean originating goods

이처럼 호주는 전체적으로 낮은 관세율과 간단한 수출입신고 절차로 자유무역경제 체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여전히 반덤핑, 상계관세 제도, 까다로운 검역 절차 등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를 구성하여 수입제품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으로부터 자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례를 조사하고 상계관세를 매기고 있다.

2015년 현재, 28개 상품에 대하여 조치가 발행중에 있으며, 이 중 우리나라 기업에 해당된 품목은 알루미늄도금 강판(Aluminium Zinc Coated Steel), 철강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s), 후판(Hot Rolled Plate Steel), 열연코일(Hot Rolled Coil Steel), 열연구조용철강파이프 (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s), PVC필름 (Polyvinyl Chloride Resin), 철근 (Steel Reinforcing Bar), 풍력타워 (Wind Towers), 아연도금강판 (Zinc Coated (Galvanised) Steel)로 총 9개 품목이다.

반덤핑 체소 뿐만아니라 까다로운 검역 기준도 호주 통관시 주요 무역장벽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입 식품은 까다로운 검역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호주 검역당국은 수입식품이 Food Standards Australia and New Zealand (FSANZ) 및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 Council (ANZFS)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면 유입을 허용한다. 동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입통관이 취소되거나 지연되어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식품 수출기업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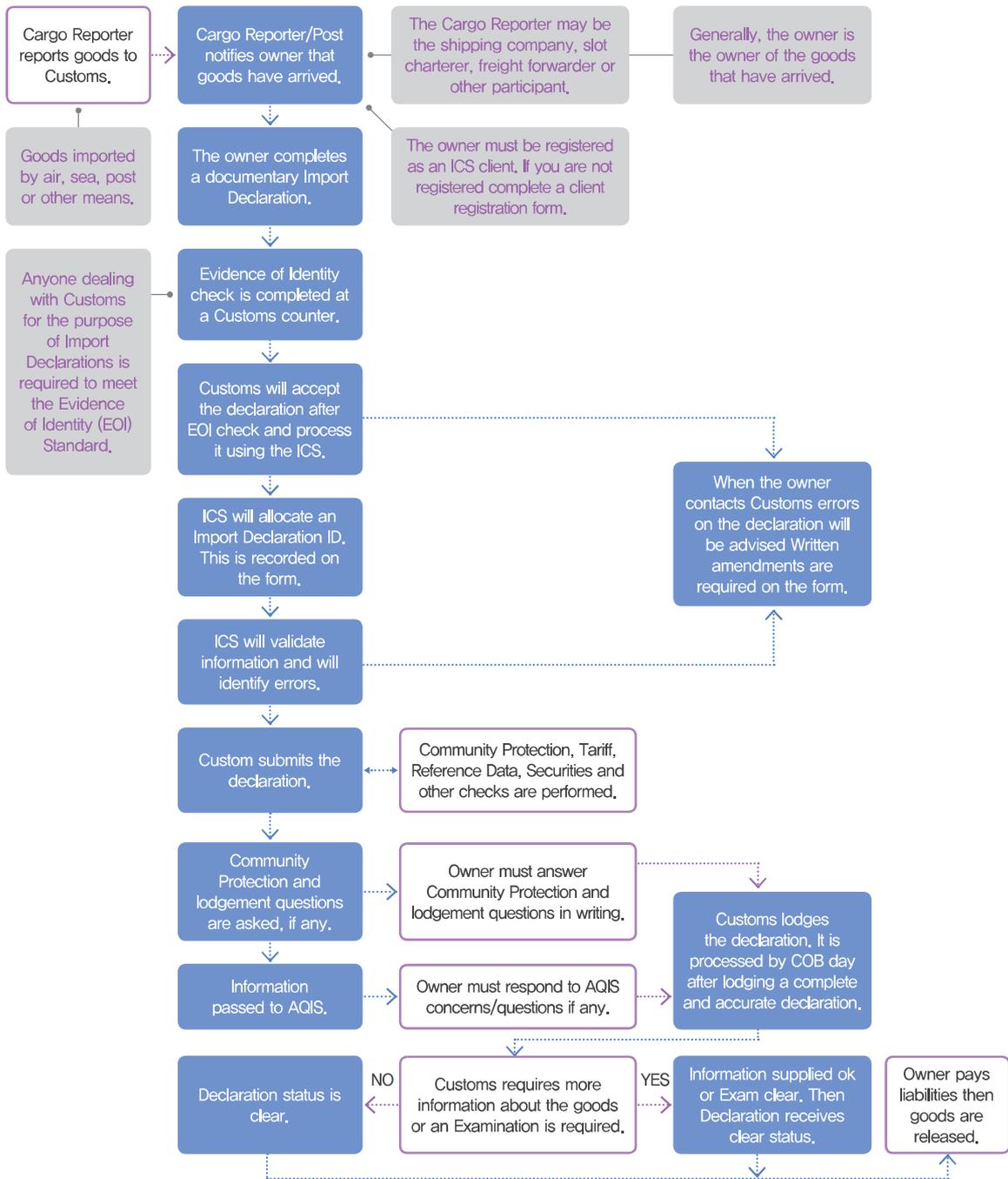
호주의 통관 절차



호주 대다수의 수입업자(수입신고 대리인)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수입신고가 전산화 되어있고 수입업자의 자율적인 판단 및 신고에 맡겨져 있어,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하지만 동시에 높은 책임과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말한다. 즉, 수입업자의 자율적 신고라는 점에서 편의성 및 효율성은 높지만 잘못된 정보 제공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작성자에 따른다는 것이다. 호주의 수입통관 신고는 수입물품의 목적에 따라 수입신고서 Nature10(가계소비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 Nature 20(수입시 창고로 보내지는 물품), Nature30(창고에 보관중이던 물품을 국내 소비를 위해 이송하는 경우)를 통해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수입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추후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수입 절차 이행 이후에도 5년 정도 보관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 경우 AQIS에 검역신고서 및 검사신고서 등 서류심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은 뒤 수입통관을 마무리 할 수 있다.

그림 1 호주 수입신고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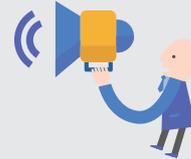
Figure 21 : Import Declaration Process



출처 :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ACBPS), 2013

06

한-호주 FTA 발효에 따른 통관 유의사항



현재까지 호주는 우리나라를 포함 9개국(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미국, 칠레, ASEAN,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이들 FTA 체결국과의 교역은 호주 총교역의 42%에 달한다. 또한 호주는 중국과의 FTA를 지난 6월 15일 정식 서명하였다. 이처럼 호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적극적인 무역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른 체결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수출업자들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2014년 12월 12일 한국-호주 FTA가 정식 발효됨에 따라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나라는 94.6%, 호주는 100%, 품목수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4.3%, 호주는 100% 품목의 관세를 10년내 철폐하도록 결정 되었다. 우리나라는 FTA의 체결로 특혜관세를 통한 관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되었다.

2014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FTA 협정문을 준용하여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하도록 되었다. 한-호주 FTA 협정의 원산지 증명과 검증 절차를 살펴보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발급의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호주는 기관증명의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서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양식없이 협정에서 정한 필수 항목을 기재하거나 권고서식을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원산지 검증의 경우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서면조사, 수출국 세관에 검증 지원 요청(간접검증)하거나 현지 직접 검증하는 방식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다. 원산지 기준은 대부분의 기계류, 전자기기 등에 대해 세번 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의 선택기준을 도입하였다.

07

맺음말



호주는 GDP 1조 5000억달러, 1인당 GDP 6만 5천달러의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으로, 한국과의 교역, 투자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한-호주 FTA 발효로 8년내 현재 교역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가 이루어져 현재 300억 달러 수준의 교역이 확대될 전망이며 호주로부터 철광, 유연탄, 원유, 알루미늄, 동광 등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기대된다.

또한 자동차, 전자제품, 통신기기, 석유화학제품, 건축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제품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전략적 무역 상대국으로써 호주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시점에 우리 수출기업들은 호주의 통관 제도 및 절차, 까다로운 검역 시스템, 라벨링 조건 등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비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FTA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